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급여실 - 2024 - 제2호

2024년 상반기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신청(품목) 공고

보건복지부「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에 따라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I 신청개요

1. 신청요건

가. (신청대상) 기존 급여품목 외에 새로운 품목의 급여를 원하는 자나. (대상품목)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품목

-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 또는 수발자의 돌봄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 재가생활 자립 지원을 위해 시설 등 기관에서의 사용보다 가정에서 사용이 적합할 것
- 질병 치료, 재활훈련 등 의료 목적이 아닌 요양 목적일 것
-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복지용구 급여품목】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 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실내·외용)

2. 신청제한

- 가. 응용 소프트웨어(application software)*를 주로 사용한 품목
 - * 하드웨어 기반의 내장형 소프트웨어인 임베디드(embedded) 소프트웨어와 구분되는 운영체제에서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모든 소프트웨어 (예: 카카오톡, 모바일 게임 등)
- 나. 신체결손 보완 등을 위한 개인 맞춤형 품목(예: 의지보조기 등)

Ⅱ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 가. 접수기간: 2024. 2. 21.(수) ~ 2. 23.(금) 18:00까지
 - ※ 접수기한을 반드시 엄수해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도착하는 경우 접수 불가
- 나. 접수방법: '등기우편' 만 가능
- 다. 제출처: 264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 25층(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복지용구부 2팀
- 라. 문의처: 033) 736 38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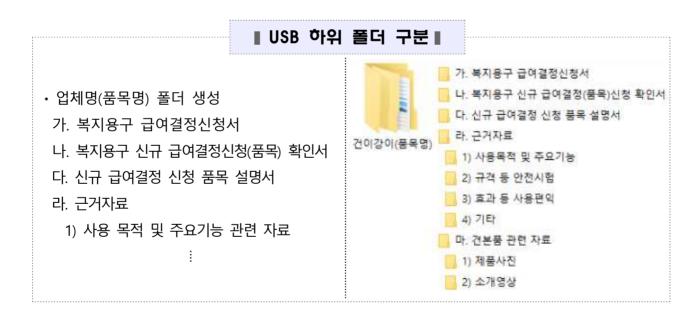
▮ 서류접수 관련 안내사항▮

- 등기우편 외 방문, 팩스, 이메일 등 **다른 접수 방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서류 접수 마감시간(2024. 2. 23.(금) 18:00)까지 도착한 신청서만 인정하므로 가급적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제출된 서류의 보완사항을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는 **USB에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USB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제출서류

- 가.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서(품목)
- 나.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신청(품목) 확인서
- 다. 신규 급여결정 신청 품목 설명서
- 라. 근거자료

- 3. 서류제출 방법 : USB 제출 ··· 실물 서류 제출 불필요
 - 가. USB 케이스에 업체명, 품목명, 제출연도('24년 상반기) 기재
 - 나.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품목) 확인서[첨부 2]의 구비서류 목록 순서로 자료를 **폴더화**하고 파일을 각각 구분하여 제출
 - ※ 모든 자료는 PDF 형식으로 제출해야함. 단, 신규 급여결정 신청 품목 설명서는 반드시 한글 파일로 제출(PDF 불가)
 - 다. 견본품 관련 자료 … 필수제출
 - 1) 사진: 최대 5.0MB 이하, 확장자는 jpg 또는 png
 - 2) 소개영상: 사용방법을 포함하여 2분 이내, 확장자는 mp4
 - ※ 견본품 관련 자료는 업체명 및 제품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제출
 - ※ 영상자료만으로 사용방법 등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견본품(실물)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coprod

신규 품목 선정 절차

신청·접수

◆ 2024. 2. 21.(수) ~ 2. 23.(금) 18시, 등기우편 접수

서류심사 (3~4월)

- ◆ 사용목적 및 주요기능, 안전성, 사용편익 등 제출 서류의 적정성 및 근거자료 내용 검토
- ◆ 서류심사 결과 보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보완·제출**

품목심사 (4~5월)

- ◆ 품목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급여적합성, 안전성, 편의성, 재정영향성 심사
- ◆ 서류심사 결과가 '**적정**'인 경우, 품목심의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품목선정 심사 진행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 (6월)

- ◆ 급여 적정성, 비용효과성 등 고려하여 신청 품목의 급여 여부 심의·의결
- ◆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 급여결정 신청결과 통보

장기요양위원회

◆ 장기요양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복지부 장관 고시

◆ 고시 등재 이후 신규 품목에 대한 제품 급여결정 신청 가능

추가 안내사항

IV

- **제출서류 누락 시** 서류심사 결과 '부적합'으로 품목 선정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서류는 별첨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신청(품목) 서류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서류작성 방법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 보완 서류 미제출 시 서류심사 결과 '부적합'으로 품목 선정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견본품 제출을 요청받을 경우**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고, 급여결정 결과 통보 후 7일 이내 공단에 **방문**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 견본품 미회수 시 공단에서 자체 폐기 예정입니다.
- 신청서에는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기재 하시기 바라며,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품목 선정 절차 진행 관련 안내 및 심사 결과는 이메일과 유선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신청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은 본 **공고문** 및 (별첨) **서류작성 방법**을 우선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품목 관련 제출서류

[첨부 1]: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서(품목)

[첨부 2] :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신청(품목) 확인서

[첨부 3] : 신규 급여결정 신청 품목 설명서

[첨부 1]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2.8.15.>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서([√]품목 []제품)

(앞쪽) 사업자등록번호 명 칭 대표자 생년월일 공급업체 주 소 전화번호 E - Mail 팩 제품사진 품목명 제품명 제품정보 인증서 종류 고령친화우수제품코드 인증번호 판매희망가격 원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4항,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복지용구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품목신청 첨부서류	1. 사용목적 및 주요 기능 관련 자료 2. 규격 등 안전 시험 관련 자료 3. 효과 등 사용편익 관련 자료 4. 기타 공단이 복지용구 급여결정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제품신청 첨부서류	1. 신청업체에 관련된 서류(업체당 1부 씩만 제출) 2. 공인규격 충족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KS 시험성적서, 단체표준인증서,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 등) 3. 고령친화우수제품지정서(해당 제품에 한함) 4. 판매희망가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 5. 제품의 기능 및 기존제품과의 차별된 특징, 장점에 대한 사진과 상세설명 6. 제품사진 7. 구성, 부품내역에 관한 자료 및 제품설명서 8. 기타 공단이 복지용구 급여결정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첨부 2]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신청(품목) 확인서

	제출	서류	구비	여부	확인
$\overline{}$		' '		\sim 1 1	

제출서류	구비	미비
1.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서(품목)		
2.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품목) 확인서		
3. 신규 급여결정 신청 품목 설명서		
4. 사용목적 및 주요 기능, 안전시험, 사용편익, 기타 근거 자료		

□ 서류심사 유의사항

- 1. 신청 품목 견본 제품의 기능, 안전성 등이 아닌 **신청한 품목의 급여 필요도 및 적정성 관점**에서 서류 작성
- 2. 신청서 및 확인서에 반드시 신청자(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 3. 제출서류 서식의 임의 변경 및 수정 금지
- 4. 신청서에 직접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이메일 정확하게 기재
- 5. 신규 급여결정 신청 품목 설명서는 '서류작성 방법'의 작성 안내에 따라 작성
- 6. 한국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원본 서류와 한국어 번역 및 공증이 완료된 서류를 함께 제출(원본 서류만 제출 또는 미번역, 미공증 시 해당 서류 '불인정')

□ 품목심사 유의사항

- 1. 제출한 견본품 **영상자료 외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견본품(실물) 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견본품은 공단 방문하여 제출**
- 2. **견본품 관련 자료(영상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급여대상 여부 심의 불가로 **급여결정 '부적합' 처리**
- 3. 급여결정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u>직접 공단에 방문하여 견본품을 회수하고</u>, 기한 내 미회수시 별도 통보 없이 자체 폐기 진행
 - ※ 견본품 우편, 택배 등 발송 불가

서류 및 품목 심사 관련 **유의사항**을 **확인**하였고, **유의사항 미준수**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인지**하였으며, **제출서류에 '이상 없음'**을 **재차 확인**하였기에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합니다.

신청 품목명		신청인(대표자)	(인)
	•		

[첨부 3]

신규 급여결정 신청 품목 설명서

	품목명				
신청정보	정의				
		1. 罟	목정보		
신청사유					
			□ 구입	□ 대여	
급여방식 및 사유					
		2. 사용 목적	석 및 주요기·	<u>_</u> 0	
사용목적		극적에 관한 내 근거자료 등 요약	ଡ		
사용대상자	○ 사용대상자에 관한 내용 ○ 관련 근거자료 등 - 제목 - 내용 요약				
국내외 사용현황	○ 국내·외 공적 급여 여부 ○ 시장조사(최소 3건 이상)				

규격명 및 규격번호					
	4. 효과 등 사용편익				
사용편익	○ 사용 편익에 관한 내용○ 관련 근거자료 등- 제목- 내용 요약				
사용 가능 햇수	○ 사용가능 햇수에 관한 내용○ 관련 근거자료 등- 제목- 내용 요약				
사용방법 등	○ 사용방법○ 주의사항○ 관리방법○ 기타				
	5. 기타				
작용원리	○ 작용원리에 관한 내용○ 관련 근거자료 등- 제목- 내용 요약				
이전 신청 이후 보완사항	 ※ 동일 품목으로 <u>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u>에 한하여 작성 ○ 이전 신청일자 ○ 통보 결과 및 사유 ○ 보완 내용 ○ 기타 보완 내용 				

	6. 첨부 근거자료 목록
	근거 자료 제목
사용목적	0
~1077	2
	근거 자료 제목
사용대상자	0
N0416N	2
	i
	근거 자료 제목
국내·외	0
사용현황	2
	근거 자료 제목
규격 등	0
안전시험	2
	1
	근거 자료 제목
사용편익	0
사공단국	2
	근거 자료 제목
사용가능햇수	0
ハラ ハ 6 大丁	2
	근거 자료 제목
사용방법 등	0
NOOH O	2
	근거 자료 제목
	0
작용원리	②
	근거 자료 제목
보완사항	0
— <u>L</u> . 10	2
	1

참 고 신규 급여결정(품목)신청 관련 근거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 ①~③ (생 략)
- ④ 제3항에 따른 급여품목 외에 새로운 복지용구 품목의 급여를 원하는 자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해당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선정을 신청 할 수 있다.
- (5)~(6) (생 략)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7조의2(복지용구 품목 급여결정신청)

- ① 제17조에 따라 품목의 급여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복지용구 품목·제품 급여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물품을 첨부하거나 구비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복지용구 품목선정을 위한 기준자료 : 별표 17
 - 2. 해당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자료
 - 3. 견본품 1점 또는 품목 확인이 가능한 영상기록물 1점
 - 4.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 ② (생 략)
- ③ 공단은 복지용구 품목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제 사용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제조·수입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서류심사)

- ① 공단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공인규격 충족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등 제17조의2, 제17조의3에 따라 품목 및 제품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서류들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서류심사를 하여야 한다.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결과 부적합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서류심사 결과통보서를 해당 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품목 및 제품 급여결정 신청 서류의 보완요청을 받은 제조·수입업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품목 및 제품의 서류심사 결과 부적합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신청 건에 대하여 품목 및 제품의 선정, 적정가격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0조의2(품목선정 심사)

- ① 공단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결과, 급여결정 신청 서류가 적정한 때에는 품목선정은 별표 17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복지용구 품목선정 심사 결과통보서를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완요청을 받은 제조·수입업자등은 조치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의 복지용구 보정심사 신청서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보정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평가위원회는 심사 또는 보정심사를 실시한 품목에 대하여 급여대상 여부를 심의한다.

제20조의3(품목심의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공단은 제20조의2제1항에 대한 심사와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품목 심의 전문가 자문회의(이하"자문회의"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⑨ (생 략)